

광주지방법원 2021. 8. 12 선고 2019나534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1. 8. 12 선고 2019나53418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9. 2. 19 선고 2016가단38103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

변론 종결 2021. 7. 8.

판결 선고 2021. 8. 12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. 2. 19. 선고 2016가단38103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심판결의 주문 제1.의 나.항 및 제2.의 나.항 중 '원고에게'를 각 '소외 D에게'로 경정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6. 17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 피고 B는 소외 D에게1)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6. 6. 17. 접수 제2928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피고 C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5. 3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C은 소외 D에게2)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6. 6. 27. 접수 제3105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당심에서 피고들이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제4 내지 9면 중 제2의 나.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나.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

(1) 당사자의 주장

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, 피고들은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,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하였으며, 피고 B는 피고 C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(2) 판단

(가)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).

(나)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인 2016. 5. 31.경과 2016. 6. 17.경 D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및 그 인정근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

1) 적극재산

1	광주 북구 L 대 2562.8㎡, M 대 500㎡, 위 양지상 기계기구 등	3,250,000,000원	다툼 없음
2	광주 동구 ○건물 P호	292,000,000원	다툼 없음
3	이 사건 각 부동산	250,000,000원	을 제7호증
4	승용차((차량번호 1 생략) 토러스)	11,192,000원	다툼 없음
5	원고에 대한 채권	10,000,000원	다툼 없음
	합계	3,813,192,000	

① 피고들은 50,000,000원 상당의 R자동차정비사업소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도 D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,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이후인 2016. 7. 29. S이 위 표 1항 기재 부동산 등을 경락 받는 한편 D과 사이에 R자동차정비사업소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5,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,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에 R자동차정비사업소 영업권 등이 객관적으로 5,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고, 위 금액에 양도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

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② 피고들은 R자동차정비업소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2016년 4, 5월분 보험금 채권 50,195,463원, D의 S에 대한 2015. 9. 1.부터 2016. 5. 31.까지의 임료 및 경비채권 93,874,565원(= 임료 54,000,000원 + 경비 39,874,565원)도 D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7 내지 19,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S은 D으로부터 R자동차정비업소 내에 있는 판금·도색 전용 작업장을 임대차보증금 1억 3,000만 원, 차임 월 600만 원, 임대차기간 2014. 2. 1.부터 2019. 1. 31.까지로 정하여 임차함과 아울러, D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S이 자동차 판금·도색 영업을 하고 S의 판금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금에서 월 차임, S 소속 직원들의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, 비용 등을 공제하여 정산한 돈을 D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(이하 '이 사건 정산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사실, 이후 S이 D을 상대로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9510호로 제기하여 2019. 8. 23.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, 이후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(광주고등법원 2019나24185, 이하 '이 사건 관련소송'이라 한다)에서 2021. 4. 21.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라 2015. 9. 1.부터 2016. 7. 29.까지 S의 영업으로 인한 R자동차정비업소의 보험매출금 262,259,964원, 카드매출금 234,000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D의 S에 대한 임료(연체 차임)채권 및 4대 보험료, 전기요금, 상하수도요금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경비 채권 합계 145,086,330원을 공제하여 정산한 결과 D은 S에게 정산금 117,407,634원(= 262,259,964원 + 234,000원 - 145,086,33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이 주장하는 R자동차정비업소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2016년 4, 5월분 보험매출금 채권, D의 S에 대한 2015. 9. 1.부터 2016. 5. 31.까지의 임료 채권 및 4대 보험료, 전기요금, 상하수도요금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경비 채권은 모두 아래 소극재산표 순번 13 기재 S에 대한 정산금 반환채무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D의 별도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. 그밖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비내역서(을 제19호증)상의 기타 경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

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) 소극재산

1	E은행에 대한 채무 5건	231,000,000원	다툼 없음
2	북광주세무서 체납세액	22,734,940원	다툼 없음
3	T카드에 대한 채무	925,500원	다툼 없음
4	U카드에 대한 채무	700,000원	다툼 없음
5	V카드에 대한 채무	366,590원	다툼 없음
6	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	① 기업대출 1,499,754,414원② 가계대출 50,000,000원	을 제28호증의 1,2
7	W에 대한 채무	1,100,000,000원	을 제29호증
8	S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	130,000,000원	을 제18호증
9	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	197,593,061원	다툼 없음
10	원고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	200,000,000원	다툼 없음
11	X에 대한 채무	301,684,931원3) 원금 300,000,000원 + 2016. 4. 21.부터 2016. 5. 31.까지의 지연손해금 1,684,931원[= 300,000,000원 × 연 5% × (41/365)]	을 제30호증
12	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채무	12,399,630원	다툼 없음
13	S에 대한 정산금반환채무4) D의 S에 대한 위 2015. 9. 1.부터 2016. 7. 29.까지의 정산금반환채무에 관하여,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(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2000다30639 판결 등 참조), 을 제4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D의 S에 대한 정산금 채무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정산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이전인 2013. 12. 11. 체결되었고 향후 정산금 채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2016. 7. 29.까지 실제로 정산금 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이후 2016. 7. 29.까지 발생한 D의 S에 대한 정산금반환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.	117,407,634원	을 제40호증
	합계	3,864,566,700	

- ① 원고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채권 2,000만 원도 D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을 제22호증의 2, 을 제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2,000만 원은 E은행 2015. 7. 22.자 대출금 2,000만 원(위 소극재산표 순번 1 중 일부)과 중복되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- ② 원고는 또한 D이 Y에 대하여 30,000,000원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, 을 제23, 24, 30,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위 30,000,000원은 위 소극재산표 순번 11 기재 X에 대한 채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- ③ 원고는 D이 S에 대해 722,344,658원 이상의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확정된 정산금을 넘어 D이 S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- ④ 피고들은 위 소극재산표 순번 2, 6의 ①, 11, 12 기재 각 채무 중 원고의 동업지분 10%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원고의 D에 대한 동업지분이 10%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(3) 소결론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3,813,192,000원이고 소극재산은 3,864,566,700원이므로,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의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,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 다만,

제1심판결의 주문 제1.의 나.항 및 제2.의 나.항 중 '원고에게'를 각 '소외 D에게'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평호

판사김혜진

판사이선희

별지

1) 원고는 원상회복청구 이행의 상대방으로 '원고'를 지정하였으나, 채권자취소소송의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하는 데 있고,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(민법 제407조) 원상회복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인 'D'으로 선택한다.

2) 위 1)과 같다.

3) 원금 300,000,000원 + 2016. 4. 21.부터 2016. 5. 31.까지의 지연손해금 1,684,931원[= 300,000,000원 × 연 5% × (41/365)]

4) D의 S에 대한 위 2015. 9. 1.부터 2016. 7. 29.까지의 정산금반환채무에 관하여,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(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2000다30639 판결 등 참조), 을 제4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D의 S에 대한 정산금 채무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정산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이전인 2013. 12. 11. 체결되었고 향후 정산금 채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2016. 7. 29.까지 실제로 정산금 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, 이

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이후 2016. 7. 29.까지 발생한 D의 S에 대한 정산금반환채무도
소극재산에 포함된다.